

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3. 5. 6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3. 5. 1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2003. 5. 1
- 라. 상정일자 : 2003. 5. 6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자치행정과장 문철주)

가. 개정이유

-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융자금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함
(안 제5조제2항).
-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·면·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(안 제6조제2항)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서 그동안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대부이율은 연 5%, 대부신청시에는 세대주 2인의 보증을 세워 운영되어 오고 있음.
-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 따라서 융자금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농촌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대부이율과 같이 연 3%로 인하하여 각 기금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임.
- 융자금 대부신청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두는 사항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대한 규제개혁 감사원 감사결과 보증인을 세대주로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라 지적된바 있고,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정비하도록 심의·의결한바 있음.
- 다만, 보증인을 두지 않음으로 융자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할 것이나 우리시의 경우 농협 서산시지부와 위탁운영 계약시 담보물건의 설정, 농업신용보증기금의 가입 등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임.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및 소수의견 : 없었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48호
의결년월일	2003. . . (제 회)

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3. 5. / .

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5. 1.
제출자 : 서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용자금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함.

□ 주요골자

- 용자금의 대부 이율을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함.
(안 제5조 제2항)
-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·면·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 (안 제6조 제2항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결과의견 : 제시된 의견 없음
- 규제개혁 위원회 확정 심의·의결자료 : 기감 05090 -11485(2002. 10.31)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"연5퍼센트"를 "연3퍼센트"로 한다.

제6조중제2항을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① (생략)</p> <p>② -----<u>연 5퍼센트</u>-----</p> <p>제6조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· <u>면·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</u> <u>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연 3퍼센트</u>-----</p> <p>제6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삭 제></p>